

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

의안 번호	317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4월 08일

발 의 자: 김정태, 권영희, 김경우,
김춘례, 김호평, 박순규,
송아량, 송재혁, 여 · 명,
이호대, 정재웅, 정진술,
추승우 의원(13명)

1. 주문

-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별첨과 같이 요구합니다.

2. 제안이유

-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

4. 이송처

- 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교육청

서울특별시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

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- 출석 장소 :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
- 출석 이유 : 주요안건 처리
- 출석 일시 : 2022. 4. 11.(월) <1일>
- 출석 대상

[서울특별시]

서울특별시시장, 부시장, 실·국·본부장,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, 출자·출연법인의 임원,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에서 제129조까지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 등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 제3항에 규정된 자

[서울특별시교육청]

서울특별시교육감, 부교육감, 실·국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소속 공무원 등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자